

[시행 2019, 2, 15.] [총리령 제1522호, 2019, 2, 15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기준과) 02-397-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(생활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4 원자력안전위원회 (방사선안전과) 02-397-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(안전정책과) 02-397-7264

104 ()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유반을 위한 용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.

- 1. B(U)형 운반물
- 2. B(M)형 운반물
- 3. C형 운반물
- 4. 핵분열성물질 운반물

109 ()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(보수한 경우에 한한다)
- 2.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(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
- 2.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-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
- 2.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

<제1522호, 2019. 2. 15.>

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